**<붙임2>**

**「퇴직연금전용 정기예금 특약」 일부 개정**

| **현행** | **개정** | **비고** |
| --- | --- | --- |
| 제1조 ~ 제3조 (내용 생략)  **제4조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거래처가 선택한다.**  제5조 ~ 제9조 (내용 생략)  제10조 중도해지  ① **중도해지시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. 다만,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재예치일 현재 은행계정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**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**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당시 고시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 단, 재예치시에는 최종 재예치일에 약정한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**  1.~ 8. (내용 생략)  **9.수수료의 징수**  **10. <신 설>**  **<신 설>**  제11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  ②~③ (내용 생략)  제12조 (내용 생략) | 제1조 ~ 제3조 (현행과 동)  **제4조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.**  제5조 ~ 제9조 (현행과 동)  제10조 중도해지  ① **만기일 전에 지급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은행계정 중도해지이율을적용한다.**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**만기일 전 지급청구 할 때에는 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 단, 제2항 제9호, 제10호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**  1.~ 8. (현행과 동)  **9.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**  **10.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**  **※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**   1. **6개월 미만: 3개월제 이율** 2. **6개월 이상 1년 미만: 6개월제 이율** 3. **1년 이상 2년 미만: 1년제 이율** 4. **2년 이상 3년 미만: 2년제 이율**   제11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, **개인형 퇴직연금**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, **개인형 퇴직연금**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.  ②~③ (내용 생략)  제12조 (내용 생략) | 예금의 계약기간  명확화  자구 수정  특별중도해지시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수수료 징수  명확화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 정의 명시  개인형 퇴직연금 분할해지 기준 명시 |